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서울특별시 거주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06월 14일(금)	06월 24일(월)	06월 25일(화)	06월 26일(수)	07월 03일(수)	07월 05일(금) ~ 07월 08일(월)	07월 16일(화) ~ 07월 18일(목)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ricent.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년 06월 14일(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06월 24일(월)	06월 25일(화)	06월 26일(수)	07월 03일(수)	07월 05(금) ~ 07월 08일(월)	07월 16일(화) ~ 07월 18일(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관 방문접수 (10:00 ~ 16:00)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9, 이편한세상 아델포레 단지내상가 108호 ■ 문의 : 1577-4830 ※ 자격확인서류 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접수건수 과밀 시 접수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척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 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주거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6억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 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1년

■ 인지세 납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를 분양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2022.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분양 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co.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홍보관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예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동작구 건축과 - 13588 호(2024.06.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1 외 5필지(362-18, 362-24, 362-39, 362-40, 381-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1개동 총 124세대 중 일반분양 91세대
 [특별공급 44세대(기관추천 9세대, 다자녀가구 9세대, 신혼부부 16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245	01	042.7600C	42C	42.7600	27.1037	69.8637	36.7611	106.6248	12.2201	28	3	3	5	-	2	13	15	-
	02	043.2117A	43A	43.2117	27.3900	70.6017	37.1495	107.7512	12.3492	33	3	3	6	1	3	16	17	2
	03	043.2117B	43B	43.2117	27.3900	70.6017	37.1495	107.7512	12.3492	28	3	3	5	1	3	15	13	2
	04	043.2117D	43D	43.2117	27.3900	70.6017	37.1495	107.7512	12.3492	2	-	-	-	-	-	-	2	-
	합 계									91	9	9	16	2	8	44	47	4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택 공급 신청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사유에 따라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곱미터(m²)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은 공동주택 최하층인 5층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 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 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전용면적기준)	042.7600C	043.2117A	043.2117B	043.2117D
약식표기	42C	43A	43B	43D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홍보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주택형과 약식표기형을 비교 및 확인 후 청약신청하셔야 하며,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해당 동호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4.09.13.		2024.12.13.	2025.03.13.	2025.10.13.	2026.01.13.	2026.04.13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날		
43A	101동 1호, 8호	33	5	2	278,615,700	370,384,300	649,0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194,700,000	
			6~7	2	286,772,400	381,227,600	668,0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8~10	6	287,631,000	382,369,000	670,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201,000,000
			11~15	7	288,918,900	384,081,100	673,0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201,900,000
			16	1	291,065,400	386,934,600	678,0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203,400,000
			18	2	291,924,000	388,076,000	680,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204,000,000
	101동 6호			19	2	292,782,600	389,217,400	682,0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20	2	294,070,500	390,929,500	685,0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205,500,000
				8~10	3	284,196,600	377,803,400	662,0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198,600,000
				11~13	2	285,055,200	378,944,800	664,0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199,200,000
43B	101동 2호	18	16~17	2	287,201,700	381,798,300	669,0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200,700,000	
			18	1	288,489,600	383,510,400	672,0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19	1	289,348,200	384,651,800	674,0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5	1	280,762,200	373,237,800	654,0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96,200,000	
	101동 3호			7	1	288,918,900	384,081,100	673,0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201,900,000
				11~14	4	291,065,400	386,934,600	678,0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203,400,000
				16	1	292,782,600	389,217,400	682,0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5	1	281,620,800	374,379,200	656,0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196,800,000
				6~7	2	289,777,500	385,222,500	675,0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8~10	3	290,636,100	386,363,900	677,0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03,100,000
101동 7호			11~14	4	291,494,700	387,505,300	679,0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16	1	293,641,200	390,358,800	684,0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05,200,000	
			7	1	288,489,600	383,510,400	672,0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10	1	289,777,500	385,222,500	675,0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11~15	5	290,636,100	386,363,900	677,0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03,100,000	
			17	1	292,782,600	389,217,400	682,0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42C	101동 4호,5호	28	18	1	293,641,200	390,358,800	684,0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05,200,000	
			20	1	295,787,700	393,212,300	689,0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206,700,000	
			6~7	3	282,479,400	375,520,600	658,0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8~10	6	283,767,300	377,232,700	661,0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11~15	9	284,625,900	378,374,100	663,0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198,900,000	
			16~17	4	286,772,400	381,227,600	668,0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20	2	289,348,200	384,651,800	674,0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43D	101동 2호	2	19	1	294,070,500	390,929,500	685,0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68,500,000	205,500,000
			20	1	294,929,100	392,070,900	687,0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

※ 상기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 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유사옵션)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합니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 이후부터 발생한 중도금 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

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연 2%로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잔금에 대하여는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42C	43A	43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1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2
	중소기업 근로자	1	-	1	2
	장애인	1	1	1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2	2	2	6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	1	1	3
신혼부부 특별공급		5	6	5	1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1	2
생애최초 특별공급		2	3	3	8
합 계		13	16	15	4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포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 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서울지방보훈청 복지와	필요 없음 (단,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청약통장 필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서울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는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 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비고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사업주체 참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6.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IV-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p> <p>-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p> <p>■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p>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비고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비고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사업주체 참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6.1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data-bbox="286 718 2083 874">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p> <p>-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p>(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p>	<p>-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p>-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03.(수) ~ 2024.07.12(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p>문자</p>	<p>- 제공일시 : 2024.07.0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Ⅶ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 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기간	2024.07.05.(금) ~ 2024.07.08.(월) (4일간) / 10:00~17:00
제출방법	홍보관 방문접수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9, 이편한세상 아델포레 단지내상가 108호

■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1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 공급 예비 포함)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시 지참 필수 • 홍보관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시 지참 필수 • 홍보관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여부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에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내용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신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의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거주 확인 위해 제출 조회기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미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홍보관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적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의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 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2024.07.16(화) ~ 2024.07.18.(목) / 3일간 10:00 ~ 16:00	「동작보라매역 프리센트」 홍보관 주소 : https://pricent.co.kr/	1577-4830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분양대금(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우리은행	1005-804-629685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계약자는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무통장 입금)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잔금 제외).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701호 계약자 → '1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및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① 계약금입금증빙서류	본인	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③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한함 [용도:아파트계약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대리신청은불가
	○		④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⑤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접수장소에비치
	○		⑥ 전자수입인지	본인	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시에첨부 1억초과10억원이하:15만원 - 10억원초과:35만원
		○	⑦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제출한경우제외
		○	⑧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서류	본인	기타사업주체가적격여부확인을위해요구하는서류
대리인 계약시	○		①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불가
	○		②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날인, 접수장소에비치
	○		③ 대리인신분증,인장	대리인	위임인과 수입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별표1]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제3조 제1항 관련)에 따라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 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https://www.e-revenuestamp.or.kr) 접속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 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이력) = 부적격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권은 무효 처리됨.
 - 부부외 세대원이 당첨자 발표일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이 수도권 1억6천만원(비수도권 1억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IX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5항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전세대 무상으로 확장되며, 이를 인지하시어 청약(또는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여부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세대 무상 확장되어 시공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 될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 PL창호 유리색상은 건축경관교통심의 조건에 따라 그레이 색상으로 적용되며, 조망 및 시야간섭이 일부 생길 수 있으며 창호 변경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납부조건 및 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기	계약 시	2024.09.13.	입주지정일
납부 금액	10%	10%	80%

■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유상옵션 공급대금	기업은행	550-000408-04-127	에이스디엔시(주)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공급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선택품목(유상옵션) 전용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옵션 구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옵션명	적용 타입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공급금액
거실	거실 확장	전 타입	알파룸	거실 확장	무상
	바닥	전 타입	강마루	포세린 타일	1,560,000
	천장	43A / 43B / 43D	전체 단천장 직부형 전등(LED 50W)	확장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LED 20W) 매입조명(LED 8W)	940,000
				확장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LED 20W) 매입조명(LED 8W)	970,000
	아트월	전 타입	포세린타일	세라믹타일	1,300,000

현관	중문, 현관 디자인월	전 타입	현관 벽체 및 화장실 벽체 : 도배 마감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현관 벽체 및 화장실 벽체 : 시트판넬 마감	2,530,000
주방	아일랜드 식탁	전 타입	-	아일랜드 식탁 및 아일랜드장	1,310,000
	주방 고급화	43A / 43B / 43D	주방 벽체 및 주방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상부장 : 여닫이장 매립형 후드	주방 벽체 및 주방 상판 : 세라믹타일 상부장 : 유리마감 플랩장 + 조명 아일랜드 후드(하츠 ISH-46S)	570,000
		42C	주방 벽체 및 주방 상판 : 엔지니어드 스톤 상부장 : 여닫이장 매립형 후드	주방 벽체 및 주방 상판 : 세라믹타일 상부장 : 유리마감 플랩장 + 조명 아일랜드 후드(하츠 ISH-46S)	1,000,000
안방	드레스룸 확장	43A/ 42C	시스템가구(포스트 타입) 여닫이문 화장대	쇼룸형 확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벽찬넬 타입) 양개 슬라이딩도어	3,440,000
		43B	시스템가구(포스트 타입) 여닫이문 화장대	쇼룸형 확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벽찬넬 타입) 양개 슬라이딩도어	3,820,000
		43D	시스템가구(포스트 타입) 여닫이문 화장대	쇼룸형 확장 드레스룸 시스템가구(벽찬넬 타입) 양개 슬라이딩도어	3,540,000
욕실	욕실 복합 환풍기	전 타입	배기팬	욕실 복합 환풍기(휴젠뜨3 FHD3-C150P_MT)	1,050,000
가전제품	빌트인 전기오븐 + 식기세척기	43A / 43B / 43D	하부장	빌트인 전기오븐(삼성 NQ36A6555CK) 빌트인 식기세척기(삼성 DW60T7065SS)	1,180,000
	빌트인 전기오븐	42C	하부장	빌트인 전기오븐(삼성 NQ36A6555CK)	310,000
	빌트인 냉장고	전 타입	냉장고장(가구틀)	빌트인 비스포크 냉장고(삼성 RR40C7995AP) 빌트인 비스포크 냉동고(삼성 RZ34C7865AP)	3,280,000
	의류관리기	전 타입	-	삼성 DF24CG5100HR	1,440,000
	세탁기/건조기	43A / 43B / 43D	-	비스포크 세탁기(삼성 WF25CB8650BE) 비스포크 건조기(삼성 DV20CB8600BE)	3,420,000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공급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공급가는 기본 제공되는 마감비용에서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에 기본 마감비용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분양계약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원상복구, 변경공사 등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구분하여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선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시공사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잔금 납부 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세금계산서)을 교부합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42C 타입은 빌트인 식기세척기 설치가 불가하며, 해당 공간에 빌트인 세탁기가 무상 제공됩니다.
- 타입별로 추가 선택품목의 크기 및 수량,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가가 차등 적용 되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대인자산신탁(주)과 무관하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X

단지 여건 및 유의 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구분	유의사항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의 제조사 사양, 색상, 유리,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43A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 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품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 마감(도로 및 기타외장재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 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급배기를 위한 덕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일부 세대는 유 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품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시스템선반 제품과 마감재 및 크기,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유·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 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 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 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색상, 마감, 형태 및 디자인) 및 마감재에 대한 내용은 상담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 분히 확인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 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흡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욕실환기팬, 환기디퓨저)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 마감 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건축허가(변경)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 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p>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 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변경)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공사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건본주택 오픈전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 내부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외 대지경계부의 단차에 따라 지하구조물 노출, 옹벽 설치, 조경석 쌓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 내 모형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차구간을 간략히 일괄적으로 표현한 바, 실시공 시에는 현장 및 주변 여건, 레벨 변경 등에 따라 적용 내용, 위치,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난방기능이 없는 냉방기가 적용됩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 기준내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설계	<p>설계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환기유니트를 통해 천장 직배기 설비 되어있습니다. 급배기구로 인한 건물 외벽은 단지 모형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5층~10층 까지의 세대 발코니에는 피난을 위한 완강기 및 탈출용 개폐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습식공간은 단차시공 및 수전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겨울철 배관 동파의 위험이 있사오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거실과 침실1(안방)에 무상 제공되며, 발코니 습식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거실, 침실1(안방) 천장에 에어컨 가동을 위한 냉매매립관이 설치되며, 별도의 추가 냉매매립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무상 제공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계약자가 별도 설치할 경우 무상 제공되는 에어컨 실외기와는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 무선리모컨이 제공되며, 유선(벽 부착식)리모컨 미제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체감 있는 건물의 형상을 위해 일부 공간에 돌출 또는 홈이 존재하며, 깊이가 다른 입면에 의해 돌풍 및 빛의 산란, 채광간섭,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 및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배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 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고층수는 지상 20층 규모이며, 이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난방방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기동식(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 구조로 공동 주택 최하층 설비 PIT 공간에서 전이구조로 시공됩니다. • 승강로와 면하거나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타워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엘리베이터) 인승, 속도, 기계설비, 마감재 등은 인허가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작구청 인허가조건(건축허가(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신고 심의, 건축심의 조건, 도로 기부채납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배치 형태, 외관, 대지 내 공지, 교통, 녹색건축 등에 의해서 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이에 따른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사업지를 위한 시설 등으로 각 시설의 위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불법구조 변경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단지 내 옥외소화전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는 관할 소방서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경관조명에 따른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및 절차에 따른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및 실시공 등 구조/성능/상품개선(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 및 난간, 입면,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은 제외)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가 해당시설 각 층 노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해당 동호수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의 실외기실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단지 내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미관 및 소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경량벽체 구간에 벽걸이 TV 등의 설치가 불가하며, 설치 시에 경량벽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외부 여건

- 단지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여의대방로, 여의대방로24길(중로3류) 등이 위치하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건축물의 신축과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본 건물의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주변의 신축 건축물 및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버스 정류장, 주변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길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우수배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차량통행 소음,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부 여건

- 단지 내부 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옥외, 옥상에는 휴게시설 및 설비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 1층 및 지하 1층 주차장 램프구간에 접하여 각각 설치되며,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단지 내에 쓰레기분리수거함, 재활용품보관창고 등이 설치되어 단지 내부 통행시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한전패드),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용 동선 및 시선간섭,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하는 도로 및 가감차로 도로 등은 착공 후 협의과정 중 도로 선형, 포장재, 담장, 조경식재, 세부계획,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현황(건물, 가로등, 가로수, 도로 등)은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안전관리시스템,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시설(음식점, 판매점, 주유소, 경로당, 지역경찰관서, 의료시설 등)에 의한 시각적 간섭,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각종 기계설비배관,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복도 및 외부 일부에 기계설비(가스관 등)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복도 일부에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외부 시설물 및 조경

- 본 건물은 건축심의를 통해 입면 및 측면 부위에 다양한 크기 창호와 형태, 조경시설, 기타 시설물 등이 설치되므로 공급받은 호실에 대해 이러한 상세한 여건을 확인하여야하며, 설치되는 루버, 환기구, 조경시설 등에 인해 채광, 눈부심 등 시야간섭,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물은 인허가청에서 주관하며 미술장식물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크기, 형상, 색채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상복합 세대배치구성 특성상 인접건물 및 주동 세대간 프라이버시 및 조망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 후 계약체결하기 바랍니다.
- 본 건물 옥탑 층에는 태양광 패널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 지상·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등의 위치는 입체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식재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특화입면을 고려한 외부돌출마감은 해당관청의 건축심의 인허가를 통해 확정된 사항으로 세대별로 일부 조망이 간섭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공간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훼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지붕층(옥탑 포함)에는 의장용 구조물, 경관용 조명, 위성 및 공청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바람에 의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게 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배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1층에는 자전거보관소가 2개소 설치되며 세대별 사용의 제한 및 자전거 거치대의 수량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학군, 국공립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 사업장으로 “영유아보호법”에 의거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관련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 사업장으로 “아동복지법” 및 “주택법”에 의한 다함께 돌봄센터 미설치 사업장이며,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공용부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고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용공간은 개인이 점용할 수 없으며, 유지, 보수 관리의 비용은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민의 이용에 따라 인접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에 건립되는 보도, 조경, 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내 설치된 공개공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된 것으로 인근 주민의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마감재 유의사항

- 본 건축물 또는 해당 세대의 특화를 위하여 기본 제공되는 마감재의 미설치로 인한 현금 반환(마이너스 옵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설들의 고장 및 수리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일 타입에서도 평면의 방향, 설비기구 배치, 내부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층 단위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현관, 욕실, 보일러실 등 제외)의 천장고는 평천장 기준 2.3M이며, 본 공사시 단위세대 내 천장높이(우물천장 높이 및 구간 포함)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관련 법규에 의해 단위호실 안방 실벽에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는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실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계약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전기,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단위세대 내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판 및 걸레받이는 인조석재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단위세대 내 입상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디퓨저 등의 위치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대내 인조대리석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기본제공 가구류, 악세사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악세사리)의 디자인 및 수납공간 구성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의 마감사양, 시설 및 조경 등과 본 건축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시설, 조경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단위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며,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가변형벽체(거실+침실) 선택에 따라서 벽, 바닥, 천장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등박스(등기구 포함) 크기 및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탁실 및 발코니 습식 공간에는 배수를 위한 배수구가 설치되며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난방은 단위세대별 개별난방으로 발코니 습식 공간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작동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개구부의 위치, 크기, 사양 및 내·외부 입면 장식물, 장식기둥 등의 형태는 본 공사 시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단위세대 내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내부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종류 및 적용여부 등은 세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엔지니어드 스톤, 타일 등)는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을 따릅니다.

지하주차장

- 주차관리실은 지하1층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통합 관리 운용됩니다.
- 주차 차단시설은 1층, 지하 2층 2개소가 설치되며, 이는 복합건물의 특성상 비주거시설과 주차공간을 구분하기 위함이며, 사용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총 주차대수는 189대(아파트 100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89대, 조업주차 2대 별도)이며, 자주식 113대, 기계식 76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복합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지하 2층 일부 및 지하 3층~지하 4층에 자주식 주차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구분 구획하였으나, 추후 구분소유자의 형평성 등 관리규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변경 및 사용상의 불편으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층 승강기(엘리베이터) 홀 및 통로,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 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경우 일부 구조물물로 인해 승하차 시, 차량 회차 시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등,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택배차, 사다리차, 이사차량 및 트럭 등의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일부 제한됩니다.(단, 지하 1층 부의 경우 조업주차 차량 진출입에 따라 주행 유효 높이는 2.7m이며 인허가 및 실시공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진입구는 주차차단기가 설치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차량 진입 시에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에 택배차량의 정차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에는 확장형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구획, 전기차 충전구획, 경차 전용구획,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등이 포함되며, 전체세대가 동일한 수준의 주차구획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구획은 오직 충전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충전 점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 폭이 일반형 주차(2.5M), 확장형 주차(2.6M), 장애인 주차(3.3M), 전기차 충전(2.5M), 경차주차(1.7M~2.0M), 여성 및 교통약자 주차(2.5M) 등으로 계획 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와 협의된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자를 통한 전기차 충전전력공급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비주거시설 전용 2대를 포함하여 총 11대(완속 9대, 급속 2대)가 지하2층에 계획 되었으며, 전기차 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의 타입, 위치, 수량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계획 상 기둥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보조석)되어 승하차 시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의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가림,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급기 및 배기를 위한 환이 설치되며, 주변으로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부대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제공(또는 시공)되는 부대복리시설의 가구 및 운동기구를 포함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또는 구입)한 집기류 및 비품, 기구 및 가구, 내부 인테리어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지상 5층에 위치하며, 부대복리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평면 계획 및 창호 등의 위치 시설의 사용용도 등은 입주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배관, 인테리어공사 등의 간섭으로 인해 부분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동파방지열선, 배기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으로 복합 구성 되어있어, 각 시설로부터의 소음,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층의 공유시설 사용 제한으로 인한 각종 분쟁사항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현장)를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어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반드시 승강기(엘리베이터) 출입문 및 내부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점검구 및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전기는 기본 용량만 공급하며, 입주 후 전기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관할 지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시설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실(방재실, MDF) 등은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구분설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에 의해 전용공간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하며, 공용공간의 임의 철거/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보행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지하1층~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지역필요시설에 입점하는 음식점, 오락시설, 병·의원, 편의시설, 판매시설 등은 개인에 따라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일부 공용부공간은 준공 후 현장AS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 구성 후 공문요청 시 까지 현장사무실 및 입주지원센터, AS센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각각의 용도별 면적구획에 따른 시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 서울보라매초로 배치 예정임 - 중학교 : 문창중, 강남중, 대방중, 성남중, 강현중으로 배치 예정임 - 고등학교 : 수도여자고, 성남고, 승의여자고, 당곡고, 영등포고로 배치예정임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군)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반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거, 학군 내 및 구역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되므로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p>• 당해 지구 내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아파트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 등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 중에 샘플하우스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분양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입주자사전점검일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단위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부대복리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 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XI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문화재 발굴 또는 “갑”(또는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않은 입주지연의 경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권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실,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아파트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24-104-0000100호	42,744,1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내용확인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1566-9009)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019.02.24. 시행)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적용	그린 2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2등급
저녹스보일러	적용	
기계환기장치	적용	
옥상녹화	적용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적용	
신재생에너지	적용	건물전체에 고정식 35kWp, BIPV 94kWp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 분	내진능력(MMI등급)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 2022)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물의 중요도와 지반의 상태를 고려해 최대유효지반가속도 0.204(g)를 산정하여 설계	Ⅶ등급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엔에이디벨롭먼트(주), 시행수탁자 (주)대신자산신탁 및 시공사 에이스디엔시(주),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이라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 「본 사업은 위탁자 [엔에이디벨롭먼트 주식회사], 시공사 [에이스디엔시 주식회사], 수탁자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토지신탁사업이다.」
- 2.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대신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본 공급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4. 「수탁자는 공급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 5.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대신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 [엔에이디벨롭먼트 주식회사]에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 6.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7. 「본건 공급 대상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수분양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8.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시, 시공사 교체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브랜드명칭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주)제이티엠종합건축사사무소	780,000,000	VAT 별도
전기, 통신, 기계소방, 전기소방	(주)선진전력기술단	260,000,000	VAT 별도
구조	(주)라임구조	10,000,000	VAT 별도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엔에이디벨롭먼트(주)	대신자산신탁(주)	에이스디엔시(주)	(주)시티허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701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701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에이동 549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1차)
법인등록번호	110111-2244385	110111-7124665	110111-8041884	135711-0157547

■ 동작보라매역 프리센트 홈페이지 : <https://pricent.co.kr/>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9번지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